

#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 과제신청 FAQ

\* 공고기간: 2026.04.30.~2026.05.14.

본 FAQ는 자주 묻는 질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I. 일반사항

### Q1. '인재양성사업을 전담(전임)할 교수 3인 이상 확보'에서 전담(전임)의 의미는?

A1. 전담(전임)할 교수란 주관연구기관 소속의 상근 전임교원 중에서 해당 인재양성 사업을 주된 업무로 전담 수행하는 교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수 3인의 인적명단을 확보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사업의 기획운영, 교육과정 운영, 석박사 학위과정 학생 지도 등 인재양성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상근 핵심 인력을 3인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Q2. 주관, 공동연구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석·박사학위과정에서 학점교류,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공동연구프로젝트 등 주관, 공동연구기관간 명확한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 Q3.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산업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3. 산업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 인턴십, 현장실습 등 교육-현장 간 연계, 공동연구수행 등 규제과학 분야 석·박사 양성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 Q4. 학생인건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4.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전일제 석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편, 부분제 학생도 연구과제에 참여가 가능하며, 전일제 석박사과정 학생은 입학생을 기준으로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Q5. 타 학과 교수님도 참여 인력으로 포함될 수 있나요?

A5. 가능합니다. 규제과학의 다학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공의 교수진 참여를 권장하되, 실제 강의 및 지도 역할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Q6. 반드시 '규제과학과'를 신설해야 하나요?

A6. 아닙니다. 기존 학과 내 '규제과학 전공' 또는 '규제과학 트랙' 등 규제과학프로그램 신설·운영도 가능합니다.

### Q7. 반드시 학부에 규제과학 관련 과목을 신설해야 하나요?

A7. 네, 그렇습니다. 관련 학부 교육과정에 규제과학개론 등 기초교과목을 신설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 Q8. 해외 연수 비용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나요?

A8. 적극 권장합니다. 글로벌 리더 양성 취지에 맞게 해외 인턴십, 국제 학술대회 참가 등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1개월 이상)의 해외연수는 (RFP 5-2)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Q9. 1단계 최소성과 미달 시 어떻게 되나요?

A9.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및 성과 등 관련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1단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중액할 수 있다.

## II. 지역자율 과제 및 수도권 제한 관련

**Q10. 지역자율 과제에서 공동연구기관(기업 또는 대학교 등)이 수도권 소재여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10. 가능합니다. 지역자율 과제에서 수도권 제외 요건은 주관연구기관에만 적용되며, 공동연구기관은 수도권 소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자율 과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동연구기관이 수도권 소재인 경우에도 지역 기여도는 주요 평가 요소로 고려됩니다.

## III. 공동연구기관 관련

**Q11. 공동연구기관은 여러 과제에 중복 참여할 수 있나요?**

A11. 가능합니다. 다만, 각 과제에서의 역할과 수행 내용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인력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과제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투입 인력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Q12. 공동연구기관은 어떤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나요?**

A12. 석·박사 학위과정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공동연구수행, 교과목 특강 참여, 학점인정 및 교류, 산학 프로젝트, 인턴십, 멘토링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석·박사 학위과정 양성이 핵심으로 비학위과정은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학위과정 연계 없이 비학위과정에만 편중된 구조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15. 공동연구기관이 산업체인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A15. 인정됩니다. 산업체는 공동연구기관 또는 협력기관(MOU 등)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학위과정 학생 참여를 전제로 한 실질적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Q13. 과제 수행 중 공동연구기관의 변경·추가가 가능한가요?**

A13. 연구관리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승인 하에 협약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변경 사유와 대체 기관의 역량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4조①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제55조①항에 따라 협약변경은 연구관리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의약RnD팀)으로 신청하고 상세절차 등 문의

**Q14. 해외 소재 기관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A14. 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에 따라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 연구기관인정범위 및 관련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매뉴얼 (2024.2.)”에 따름